

제4.4호

행정명령

뉴욕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뉴욕주 전역의 재난 비상 사태 지속 선포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의 인력난이 발생하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의 심각한 인력난은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계층을 올바르게 돌볼 수 있는 능력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료 시설이 제역할을 하려면 즉각적으로 직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행정법 제2-B조 제28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행정명령 4와 행정명령 4.3에 계속 명시된 주 재난 비상 사태를 2022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행정명령 4, 4.1, 4.2 및 4.3에 포함된 조건, 약관 및 효력 정지를 이어갑니다.

추가로, 주 비상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를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하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법률을 본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일부터 2022년 1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요양원이 1일 평균 직원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는 것이 공중보건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범위까지 보건법 제2895-b조 제3항.
- 거주자 건강관리시설이 세입의 최소 70%를 직접 거주자 접대형 직원에 지출하지 않는 한 공공보건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범위까지 공공보건법 제2828조 제1항.

2021년 12월 31일 올버니 시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해 이를

발표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